

【공고 : 예실본 2012-2】

2012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

자격 보수교육 실시

‘자격기본법’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‘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2012년 보수교육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- 교육명 :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2012년 보수교육
- 교육일시 : 2012년 10월 6일(土) 오전 9시 ~ 오후 6시(8시간)
- 교육등록 : 2012년 9월 24일(월) ~ 10월 4일(목)
- 교육장소 : 추후 공고
- 교육대상 : - 2006년~2009년에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
-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
- 교육내용 : 보수교육의 취지, 경전 선독, 인성교육과 예, 현대예절, 관혼상제 실제
- 교육비용 : 80,000원(교재비, 중식비 포함)
- 신청서 접수 : 보수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(팩스 접수도 가능)
- 교육문의 : 우110-8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2-24 2층
(사)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(전화 02-745-0921, 팩스 02-747-4805)
-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006-301-224658(예금주 (사)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)

- * 보수교육실시 근거 : 자격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 실시
- *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3년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유지됨(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관리 · 운영규정 제67조 3항에 근거)
- * 보수교육 불참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관리 · 운영규정 제64조 3항에 의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2012년 9월 18일

(社)汎國民禮儀生活實踐運動本部 理事長